

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대비표

| 현행  | 개정안   | 수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-----</p>   | <p>제1조(목적) 현행과 같음</p>   | <p>제1조(목적) 개정안과 같음</p>       |
| <p>제2조(기금의 조성)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br/>1. -----<br/>2. -----<br/>3. -----</p>  |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현행과 같음</p>   |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개정안과 같음</p>   |
| <p>제3조(기금의 운용관리)<br/>①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이상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 제10조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br/>②예탁관리하는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3조(기금의 운용관리)<br/>①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<br/>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,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3조(기금의 운용관리) 개정안과 같음</p> |
|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이 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  |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br/>1.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, 정비를 요하는 사업<br/>2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<br/>3.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.</p>  |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개정안과 같음</p>  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 수정안   |
|--|---|---|
| <p>제5조(기금의 회계관리) 이 기금의 수입,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사하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 세출의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</p> <p>제6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,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<br/>1. 기금운용관 : 도시국장<br/>2. 기금출납원 : 건설행정계장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 | <p>4.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, 수문, 배수관,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<br/>5. 하수도시설(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)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<br/>6.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(사하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)의 정비사업</p> <p>제5조(기금의 회계관리) 기금의 수입,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로 처리한다.</p> <p>제6조(회계공무원) ①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1. ----- : -----<br/>2. ----- : 건설행정업무 담당주사</p> <p>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운용, 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br/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| <p>제5조(기금의 회계관리) 개정안과 같음</p> <p>제6조(회계공무원) ①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1. ----- : -----<br/>2. ----- : 방제-----</p> <p>②개정안과 같음</p> <p>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개정안과 같음<br/>②개정안과 같음</p> |

| 현행  | 개정안   | 수정안   |
|---|---|---|
|   |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.<br>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소속 실·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br>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, 건설과 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개정안과 같음<br>④개정안과 같음<br>⑤-----<br>-----방재-----<br>----- |
| (신설)  | <b>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</b><br>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br>1. 기금의 운용계획<br>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<br>3. 기금의 결산<br>4. 기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| <b>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</b><br>개정안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|
| (신설)  | <b>제9조(위원회의 운용)</b>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br>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<br>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 <b>제9조(위원회의 운용)</b> 개정안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제7조(결산 및 보고)</b>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br>②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| <b>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</b><br>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br>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 | <b>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</b> 개정안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|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 수 정 안   |
|---|--|---|
| <p>제8조(시행규칙)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| <p>1. 기금의 조성계획<br/>2. 기금의 사용계획<br/>3. 기금의 운용방법<br/>4.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</p> <p>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,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시행규칙) 현행과 같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현행과 같음</p> | <p>제11조(시행규칙) 개정안과 같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개정안과 같음</p> |